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세버스·특수여객자동차 운행 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철저 안내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조합에서는 전세버스·특수여객자동차에 6세 미만 유아가 탑승하여 운행 시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시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근 거 법 령 >

◆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(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,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사무관 노혜정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신충수 버스정책과장 10/21 강인철
협조자

시행 버스정책과-16482 (2024. 10. 21.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1동 5층 (서소문동) / http://www.seoul.go.kr
전화 02-2133-2291 /전송 02-2133-1049 / happyaur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